

# '가축사육 거리제한' 관련 설명자료

▶ 2016. 3. 2 (사)한국오리협회

## ▣ 지자체별 거리제한 기준(조례) 완화

○ 2011. 10월 환경부에서 각 지자체에 시달한 가축사육 조례 개정 권고안에 따라 최근까지 가축사육거리제한 기준이 다소 강화됨.

- 강화된 기준에 따라 무허가축사의 적법화 및 농가의 신규 진입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됨

⇒ 이에 **환경부 및 농식품부 공동 연구용역**을 통해 **가축사육거리제한 재권고안**을 지자체에 시달하여 **조례 개정**을 통한 **거리제한 완화 유도**

구분	기존 권고안	금번 권고안		비고
달 · 오리	500m	20천수 미만	250m	악취로 인근 주민에 영향을 미치는 축사는 거리제한을 두되, <b>악취저감을 위해 노력할 경우 신축 및 증개축 시 거리제한 완화</b>
		20천수 ~ 50천수	450m	
		50천수 이상	650m	

\* 각 지역 의원 설득을 통한 조례 개정 추진 및 반영 필요

## ▣ 가축사육거리제한 적용 유예

○ 가축거리제한 지정·고시 이전부터 존재한 기존 축사의 경우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도 축사 설치 허가 또는 신고가 가능토록 개선  
-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·고시 이전부터 존재하는 기존 축사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 증거서류를 제출

\* 축산업 허가증, 건축물 대장, 재산세납부영수증, 이장 및 3인 이상의 주민확인서, 임대계약서, 약품·사료구입 등 사육증명서, 예방접종 등의 사육증명서 中 택 1.

⇒ 가축거리제한 조례 제정 이전 또는 조례가 강화되기 이전부터 존재한 '13. 2. 20\*일 이전의 기존 축사의 경우 현재 가축사육 거리제한구역이라도 3년('15. 3. 25 ~ '18. 3. 24) 간 축사 허가 또는 신고 가능

(가축분뇨법 부칙 제8조) \* '13. 2. 20 : 범부처 무허가 축사 개선 대책 발표일